

울산지방법원 2020. 12. 17 선고 2020가단606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

담당변호사 홍진의

변론 종결 2020. 11. 12.

판결 선고 2020. 12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0,277,4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C(이하 "C"이라 한다)으로부터 2016. 6. 임금 11,666,667원, 2017. 4.부터 2017. 6.까지의 임금 2,100만 원, 퇴직금 17,610,752원 등 합계 50,277,419원을 받지 못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8. 3.경 C의 대표 D으로부터 D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채권을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.

다. 원고는 위 D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실시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(이하 "이 사건 경매절차"라고 한다)에서 2020. 3. 27.경 배당요구를 하였다. 그러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2순위로 피고가 약 59억원을 배당받았다. 라. 원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므로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에도 피고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50,277,419원을 반환해야 한다.

2. 판단

가. 관련 법리

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,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,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·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,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(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다10263 판결,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1다70702 판결 등 참조).

또한 근로기준법 제38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가 정하는 '사용자의 총재산'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,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(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719 판결, 대법원 1999.

2. 5. 선고 97다48388 판결 등 참조).

나.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

갑 1 내지 4호증, 을 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, 즉 D 소유의 경주시 F 공장용지 999m² 외 토지, 건물, 기계기구 등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. 4. 22. 1순위로 근로복지공단과 G 외 5인이 배당을 받고, 2순위로 피고가 1순위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점, 피고는 그 채권액이 8,002,784,608원이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한도 75억 원내에서 5,942,651,638원을 배당받은 점,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2020. 3.경에서야 위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점(위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이 2020. 2. 3.이고 매각결정기일이 2020. 2. 10.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배당요구종기는 그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), 원고는 위 경매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피고가 양수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(2013. 12.경 채권최고액을 75억 원으로 정하여 설정되었다)보다 후순위인 점, 원고는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D 소유 재산에 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자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,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보다 선순위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매각대금을 우선 배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윤원묵